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1220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7. 14.

판 결 선 고 2021. 8. 18.

주 문

1.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6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51,558,3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 51,558,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기재와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김미진

별지